

# 대한상의 브리프

영국표준협회 안정권 전문위원



제83호 2018년 11월 12일



OECD는 올해 5월 기업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실사지침을 채택해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OECD 규범 강화 동향과 실사지침이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외부 링크는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업책임경영, OECD 규범 강화 동향과 시사점

### 최근 다국적기업의 책임경영

2015년 2월 애플은 자사의 협력사 중 18개 업체와 거래를 중단했다. 그런데 이유가 생소했다. 품질이나 납기, 단가 문제가 아니었다. 애플은 협력사 실사를 통해 아동 강제 노동, 임산부 차별, 환경 이슈 등을 문제 삼고 협력사들과 거래를 끊었다. 애플은 매년 전 세계 수백 개 협력회사에 노동 인권 환경 안전 등에 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급망 전체에 걸친 자사의 CSR 성과를 연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법규 준수를 넘어 광범위한 CSR 이행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애플의 사례 외에도 나이키(신발 의류), 월마트(유통), BMW(자동차), 이케아(가구), BASF(화학), HP(전자), BT(통신)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업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OECD, UN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최근 기업들의 실제적인 이행과 성과에 중점을 둔 지침들을 제시하면서 국제규범의 실효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 [ 애플의 협력회사 CSR 평가 보고서 ]



※ 출처 : Apple

특히 CSR의 비즈니스 통합 요구와 공급망 차원의 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되면서 기존의 사안별 사후 대응보다 실사를 통한 사전적, 직접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부쩍 높아졌다. 이런 면에서 지난 5월 OECD가 발표한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OECD 규범 강화 동향

#### 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는 19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다국적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인권, 노동, 환경보호, 농물공여 및 청탁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왔다.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개념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경제 환경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환경 오염, 인권침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간 투자협정 체결에도 기업책임경영 관련 조항이 포함되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구성 ]

- ① 개념 및 원칙    ② 일반정책    ③ 정보공개
- ④ 인권    ⑤ 고용 및 노사관계    ⑥ 환경
- ⑦ 뇌물공여 및 청탁 방지    ⑧ 소비자 보호
- ⑨ 과학 및 기술    ⑩ 경쟁    ⑪ 조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에 동의한 국가의 정부와 기업에게 기본적인 기준으로 권고되고 있다. 또한 참여국 정부는 분쟁 해결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OECD 회원국을 포함한 48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NCP의 사무국 역할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다.

## ② 실사지침의 제정과 의미

그동안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더욱 강화되었다. 2011년 5차 개정에서는 UN ‘기업과 인권이 행 지침’을 반영하여 인권 항목을 포함시켰고, 올해 5월에는 기업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실사지침을 통해 인권, 노동, 환경, 뇌물, 소비자 이익, 정보공개 등에 기업 스스로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았다.

그간 국내기업들은 기업책임경영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과 사업, 규모와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실사지침이 나온 것은 향후 다국적기업은 물론 그 공급망에 속해 있는 수많은 대중소기업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실사지침은 이해관계자가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이므로 기업과 이해당사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줄 수 있어 긍정적이다. 반면 앞으로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실사를 요구할 때 실사지침 요건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식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들은 실사지침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③ 실사의 정의와 범주

실사지침에서는 실사(Due Diligence)를 “기업의 운영, 공급망, 기타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 · 완화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행위”라고 정의한다.

적용 범주는 기본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참여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기업과 연관이 있다면 실사지침의 적용 대상이 된다. 즉, 다국적기업의 공급망 내에 있다면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 ④ 실사 절차 6단계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절차는 ① 기업책임경영을 경영시스템에 반영 → ② 기업경영, 공급망, 사업관계에서의 부정적 사항 평가 → ③ 부정적 사항이 있다면 중단, 예방, 완화조치 마련 → ④ 완화조치 이행·결과 모니터링 → ⑤ 실사 전과정을 이해관계자와 소통 → ⑥ 필요 시 구제절차 진행으로 구성된다.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1단계인 경영시스템 토대 위에서 2단계에서 5단계의 활동이 주기적,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실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경우 구제절차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첫째, 실사지침 제정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은 기업 책임경영 이슈가 사업에 직접적인 리스크가 되거나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고객사의 요구에 잘 대응하지 못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둘째, 실사지침은 ‘사실상 스탠더드(de facto standard)’가 될 가능성성이 높다.

실사지침은 국제적으로 합의되었고, 정부, 투자자,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관련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공급망을 포함한 자사의 모든 사업 범위에 대해 실사지침에 따른 이행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OECD 수준으로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하려면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다수 기업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요구가 닥치기 전까지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 국제규범과 동향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 출처 :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OECD, 2018)

# 국내·외 경제지표

2018년 11월 12일 기준

##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6	2017 <sup>(E)</sup>	IMF		OECD	
			2018 <sup>(P)</sup>	2019 <sup>(P)</sup>	2018 <sup>(P)</sup>	2019 <sup>(P)</sup>
한국	2.8	3.1	2.8	2.6	2.7	2.8
세계	3.2	3.7	3.9	3.9	3.7	3.7
미국	1.5	2.2	2.9	2.5	2.9	2.7
중국	6.7	6.9	6.6	6.2	6.7	6.4
일본	1.0	1.7	1.1	0.9	1.2	1.2
EU	2.0	2.4	2.0	1.9	2.0	1.9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 2. 환율·유가<sup>1)</sup>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18.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원/달러	1,161	1,131	1,076	1,093	1,123	1,121	1,121	1,131
원/엔(100엔)	1,068	1,009	981	993	1,008	1,010	1,003	1,003
원/위안	174.4	167.5	169.2	169.1	167.1	163.7	163.4	163.3
원/유로	1,283	1,276	1,272	1,275	1,312	1,296	1,305	1,300
유가(Dubai)	53.8	53.2	74.4	73.6	73.1	72.5	77.2	79.4

##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18.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3.0	2.3	1.7	0.2	1.4	1.6	-4.8	-
소매판매	3.9	1.9	4.5	4.0	5.5	5.9	0.5	-
설비투자	-1.3	14.1	-3.5	-14.7	-10.1	-11.3	-19.3	-
수출	-5.9	15.8	12.8	-0.3	6.1	8.7	-8.2	22.7
수입	-6.9	17.8	12.9	11.0	16.4	9.4	-1.6	27.9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